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2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백선희·안규백·박홍근

이학영 • 전종덕 • 김재원

신영대 • 이건태 • 이춘석

황운하 · 강득구 · 서왕진

이해민 · 이소영 · 김준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

31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4(미성년 유가족의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 ①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부모를 상실한 미성년 유가족(이하 "미성년 유가족"이라 한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아 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을 보호 및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미성년 유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미성년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의4(미성년 유가족의 즉각
	적인 보호 및 지원) ① 자연재
	해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
	여 부모를 상실한 미성년 유가
	족(이하 "미성년 유가족"이라
	한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을
	보호 및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은 미성년 유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긴
	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
	정된 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④ 미성년 유가족 보호 및 지
	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